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의 지정 관련 사항을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외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인력증원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고 과장급 개방형직위 임용 가능정원을 임기제 정원으로 반영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술직군 명칭을 기술서기관에서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연구기관지원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디지털포용정책팀 및 디지털포용정책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11일에서 2025년 9월 11일까지,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26일에서 2025년 9월 26일까지로 각각 2년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10명(6급 10명)의 직급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상향 조정(5급 10명)하면서 국립전파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에서 운영 중인 인력 17명(6급 8명, 7급 3명, 8급 4명, 9급 2명)의 직급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상향 조정(5급 8명, 6급 3명, 7급 6명)하도록 존속기한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립전파연구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1명(9급 1명)을 행정·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16. ~ 8.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연구기관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연

구기관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제30호 중 “지정기관”을 “지정, 임시허가 기관·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1호 및 제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연구개발특구 규제 신속확인 제도의 운영

32.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제품·서비스 임시허가 제도의 운영

제8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7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를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5항에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품질평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8.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및 개선조치

19. 통신과금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보호 정책의 수립·추진

제12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8호를 삭제한다.

40. 연구지원체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16조제2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으로,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민간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한 보호 대책 이행여부 확인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4. 민간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고출력 전자기파 취약점 분석·평가, 취약점 점검·제거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5. 전자파 침해 방지 및 전자파 보안 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제16조제6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위성 관련 주파수의 국제등록·조정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15. 위성망의 공유기술에 관한 연구

제17조제1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을 “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성전파감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을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를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을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를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공업연구관·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를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연구관·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행정주사”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을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8명(4급 3명)”을 “22명(4급 7명)”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7퍼센트”를 각각 “10퍼센트”로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을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같다”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중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313”을 “323”으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연구사 “212”를 “202”로 한다.

별표 5 중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4”를 “5”로 하고, 열관리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6 중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4”를 “5”로 하고, 열관리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3 ~ 별표 8의 ‘기술서기관’ 명칭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중 “2023년 9월 11일”을 “2025년 9월 11일”로, “2023년 9월 12일”을 “2025년 9월 12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3년 9월 26일”을 “2025년 9월 26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19명”을 각각 “29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2명, 방호주사보 1명)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2명, 방호서기 1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8의 정원 14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6명,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공업연구사 또

는 기록연구사 3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명)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6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명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대변인) ① (생략)	제2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u>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으로 보한다.	② ----- -----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u>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u>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조(감사관) ① (생략)	제3조(감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② -----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 ⑤ (생략)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정보보호담당관·국제협력총괄담당관·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⑥ ----- ----- ----- ----- ----- -----

및 다자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 -----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
⑦ ~ ⑮ (생략)	⑦ ~ ⑮ (현행과 같음)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제6조(운영지원과) ----- --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
제7조(연구개발정책실) ① ~ ⑤ (생략)	제7조(연구개발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연구개발정책실에 연구개발정책과·기초연구진흥과·원천기술과·생명기술과·첨단바이오기술과·융합기술과·거대공공연구정책과·우주기술과·원자력연구개발과·거대공공연구협력과·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연구산업진흥과·지역과학기술진흥과 및 연구기관지원팀을 두되, 각 과장은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연구기관지원팀장은 <u>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으로 보한다.	⑥ ----- ----- ----- ----- ----- ----- ----- -----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으로, 연구기관지원팀장은 <u>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u> ---.
⑦ ~ ⑮ (생략)	⑦ ~ ⑮ (현행과 같음)

<19>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9. (생략)

30.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지정기관에 대한 지원 ·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②② (생략)

제8조(미래인재정책국) ① (생략)

② 미래인재정책국에 미래인재
정책과 · 미래인재양성과 · 과학
기술문화과 및 과학기술안전기
반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
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
로,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 서
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
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략)

제9조(정보통신정책실) ① ~ ⑥
(생략)

⑦ 정보통신정책실에 정보통신

1. ~ 29. (현행과 같음)

30. -----
 -- 지정, 임시허가 기관·기업

31. 연구개발특구 규제 신속화 인 제도의 운영

32.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제품·서비스 임시허가 제도의 운영

②⑩ (현행과 같음)

제8조(미래인재정책국) ① (현행
과 같음)

② _____

----- 부이사
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

관으로,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
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정보통신정책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_____

정책총괄과 · 디지털사회기획과
· 디지털신산업제도과 · 디지털
포용정책팀 · 인공지능기반정책
과 · 데이터진흥과 · 인터넷진흥
과 · 디지털인재양성팀 · 소프트
웨어정책과 · 소프트웨어산업과
· 디지털콘텐츠과 · 정보통신산
업정책과 · 정보통신방송기술정
책과 및 정보통신산업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
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디
지털포용정책팀장 및 디지털인
재양성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
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
무관으로 보한다.

⑧ ~ ㉑ (생략)

제10조(네트워크정책실) ① ~ ⑤
(생략)

⑥ 네트워크정책실에 네트워크 정책과 · 디지털기반안전과 · 정보보호기획과 · 정보보호산업과 · 사이버침해대응과 · 통신정책기획과 · 통신경쟁정책과 · 통신이용제도과 · 통신자원정책과 · 방송진흥기획과 · 뉴미디어정책

----- 부이사관 · 과
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
사무관-----.

⑧ ~ ②① (현행과 같음)

제10조(네트워크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_____

과 및 디지털방송정책과를 두 되, 각 과장은 <u>부이사관·서기 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 다.	----- ----- <u>부이사관·과학기술 서기관 또는 서기관</u> ----- --.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⑫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⑫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u>품질평가에 관한 종합계획 의 수립 및 시행</u>	<삭 제>
15. <u>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및 개 선조치</u>	<삭 제>
16. <u>통신과금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보호 정책의 수립·추 진</u>	<삭 제>
17.·18. (생 략)	17.·18. (현행과 같음)
⑬·⑭ (생 략)	⑬·⑭ (현행과 같음)
⑮ 통신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⑮ -----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u>품질평가에 관한 종합계획 의 수립 및 시행</u>
<신 설>	18. <u>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및 개 선조치</u>
<신 설>	19. <u>통신과금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보호 정책의 수립·추</u>

⑯ ~ ⑱ (생 략)	진 ⑯ ~ ⑱ (현행과 같음)
제12조(전파정책국) ① (생 략)	제12조(전파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전파정책국에 전파정책기획 과·전파방송관리과·주파수정 책과 및 전파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u>부이사관·서기관·기 술서기관</u> 또는 <u>공업연구관</u> 으로 보한다.	② ----- ----- ----- ----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 관·서기관</u>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과학기술정책국) ① (생 략)	제13조(과학기술정책국) ① (현행 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책국에 과학기술 정책과·과학기술전략과·과학 기술정책조정과 및 성장동력기 획과를 두되, 각 과장은 <u>부이사 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 로 보한다.	② ----- ----- ----- ----- <u>부이사 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 관</u>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① (생 략)	제14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개발투자심의국에 연구 예산총괄과·연구개발투자기획 과·공공에너지조정과·기계정 보통신조정과 및 생명기초조정	② ----- ----- ----- -----

과를 두되, 각 과장은 <u>부이사관</u> · <u>서기관</u> 또는 <u>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 <u>부이사관</u> · <u>과학기술서기관</u> 또는 <u>서기관</u>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성과평가정책국) ① (생 략)	제15조(성과평가정책국) ① (현행 과 같음)
② 성과평가정책국에 성과평가 정책과 · 연구평가혁신과 · 연구 제도혁신과, 연구윤리권익보호 과, 과학기술정보분석과 및 연 구개발타당성심사팀을 두며, 각 과장은 <u>부이사관</u> · <u>서기관</u> 또는 <u>기술서기관</u> 으로 보하고, 연구개 발타당성심사팀장은 <u>서기관</u> · <u>기술서기관</u> · <u>행정사무관</u> · <u>공업</u> <u>사무관</u> · <u>전산사무관</u> 또는 <u>방송</u> <u>통신사무관</u> 으로 보한다.	② ----- ----- ----- ----- ----- <u>부이사관</u> · <u>과학기술서기</u> <u>관</u> 또는 <u>서기관</u> ----- ----- <u>과학기술서</u> <u>기관</u> · <u>서기관</u> · <u>공업사무관</u> · <u>전</u> <u>산사무관</u> · <u>방송통신사무관</u> 또 는 <u>행정사무관</u>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연구평가혁신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④ ----- -----.
1. 삭 제	
2. ~ 39. (생 략)	2. ~ 39. (현행과 같음)
<신 설>	40. 연구지원체계의 평가에 관 한 사항
⑤ 연구제도혁신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⑤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연구지원체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	<삭 제>
9. 삭 제	
10. ~ 29. (생 략)	10. ~ 29.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국립전파연구원) ① (생 략)	제16조(국립전파연구원) ① (현행 과 같음)
② 국립전파연구원에 지원과 · 전파자원기획과 · 전파환경안전 과 · 기술기준과 · 정보통신적합 성평가과 및 정보운영과를 두 되, 지원과장 · 전파환경안전과 장 및 정보운영과장은 <u>서기관</u> · <u>기술서기관</u> · <u>행정사무관</u> · <u>공업</u> <u>사무관</u> · <u>전산사무관</u> · <u>방송통신</u> <u>사무관</u> 또는 <u>공업연구관</u> 으로, 전파자원기획과장 · 기술기준과 장 및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 은 <u>서기관</u> · <u>기술서기관</u> 또는 <u>공</u> <u>업연구관</u> 으로 보한다.	② ----- ----- ----- ----- ----- <u>과학기술</u> <u>서기관</u> · <u>서기관</u> · <u>공업사무관</u> · <u>전산사무관</u> · <u>방송통신사무관</u> · <u>행정사무관</u> ----- ----- ----- -- <u>과학기술서기관</u> · <u>서기관</u> 또 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전파자원기획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④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위성 관련 주파수의 국제등	<삭 제>

<u>록·조정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u>	
<u>10. 위성망의 공유기술에 관한 연구</u>	<u><삭 제></u>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⑤ 전파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⑤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3. 민간 분야 주요정보통신기 반시설의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한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4. 민간 분야 주요정보통신기 반시설의 고출력 전자기파 취 약점 분석·평가, 취약점 점검· 제거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 항</u>
<u><신 설></u>	<u>15. 전자파 침해 방지 및 전자파 보안 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u>
⑥ 기술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4. 위성 관련 주파수의 국제등 록·조정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u>
<u><신 설></u>	<u>15. 위성망의 공유기술에 관한</u>

	<u>연구</u>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17조(전파시험인증센터) ① 전 파시험인증센터장은 <u>서기관· 기술서기관</u> 또는 공업연구관으 로 보한다.	제17조(전파시험인증센터) ① -- ----- <u>과학기술서 기관·서기관</u> ----- -----.
② 전파시험인증센터에 지원과 · 사후관리과 및 적합성인증과 를 두되, 각 과장은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전산사무관· 방 송통신사무관</u> 또는 공업연구관 으로 보한다.	② ----- ----- ----- <u>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u>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우주전파센터) ① 우주전 파센터장은 <u>서기관·기술서기 관</u>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 다.	제18조(우주전파센터) ① ----- ----- <u>과학기술서기관·서 기관</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중앙전파관리소) ① (생 략)	제19조(중앙전파관리소) ① (현행 과 같음)
② 중앙전파관리소에 지원과· 전파계획과·전파관제과·전파 관리과 및 전파보호과를 두되, 각 과장은 <u>서기관·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시 설사무관· 전산사무관</u> 또는 방	② ----- ----- ----- <u>과학기술서기관·서 기관·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u>

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 ----- ----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3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과학기술 일자리혁신관 및 감사관을 말한다.	<삭 제>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정보화담당관·첨단바이오기술과장·연구산업진흥과장·연구제도혁신과장·정보보호산업과장 및 전주전파관리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삭 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연구기관지원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디지털포용정책팀 및 디지털인재양성팀은 2023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고, 2023년 9월 12일 이후부터 연구기관지원팀장,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 디지털포용정책팀장 및 디지털인재양성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장, 미래인재정책과장,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및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 ----- ----- ----- ----- ----- 2025년 9월 11일----- 2025년 9월 12일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3년 9월 26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 ----- -- 2025년 9월 26일----- --.

는 정원은 별표 8의 행정주사· 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 송통신주사·공업연구사 또는 기 록연구사 6명, 행정주사보·공업 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 행정 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 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 행 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 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 기보 2명으로 본다.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 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 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 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 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 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 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항공 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	· · 313 ·	· · 323 ·	+10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 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 생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 사 또는 연구사 . .	212	202	-10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국립전파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 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 , 열관리운영서기보	, , 4 , , 2	, , 5 , , 1	, , +1 , , -1

[별표 6]

국립전파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4	5	+1
열관리운영서기보	2	1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824
정무직 계	4
장관	1
본부장	1
차관	2
별정직 계	5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비서(6급 상당)	1
비서(8급 상당)	2
일반직 계	815
고위공무원단	2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0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8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3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68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	

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294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농업 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 주사 또는 연구사	231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 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농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수의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보건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식 품위생주사보 · 항공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6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통계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 전 산서기 · 방송통신서기 · 사서서기 · 기상서기 · 농업서기 · 임업서기 · 해양수산서기 · 보건서기 · 의료기술서기 · 식품위생서기 또는 항공서기	3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통계서기보 · 환경서기보 · 시설 서기보 · 전산서기보 · 방송통신서기보 · 사서서기보 · 기 상서기보 · 농업서기보 · 임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보건서기보 · 의료기술서기보 · 식품위생서기보 또는 항 공서기보	13
운전서기보	8
사무운영서기보	7
전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기획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홍보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824
정무직 계	4
장관	1
본부장	1
차관	2
별정직 계	5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비서(6급 상당)	1
비서(8급 상당)	2
일반직 계	815
고위공무원단	2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0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8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3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68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	323

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항공사무관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1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연구사	202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기상주사보·농업주사보·임업주사보·수의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보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항공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61
행정서기·공업서기·통계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방송통신서기·사서서기·기상서기·농업서기·임업서기·해양수산서기·보건서기·의료기술서기·식품위생서기 또는 항공서기	31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통계서기보·환경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사서서기보·기상서기보·농업서기보·임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의료기술서기보·식품위생서기보 또는 항공서기보	13
운전서기보	8
사무운영서기보	7
전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기획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홍보 담당)

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

1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국립전파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190
일반직 계	190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5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22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54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1
운전주사보	1
위생주사보	1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8
방호서기	2
위생서기	1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
방호서기보	4
공업연구관	7

공업연구사	28
사무운영주사	2
사무운영주사보	2
사무운영서기	1
열관리운영서기보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u>국립전파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u>	
총계	190
일반직 계	190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5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24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52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1
방호주사보	1
운전주사보	1
위생주사보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8
방호서기	1
위생서기	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
방호서기보	4
공업연구관	7
공업연구사	28

사무운영주사	2
사무운영주사보	2
사무운영서기	1
열관리운영서기보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정원표 (제28조제2항 본문 관련)

총계	868
일반직 계	868
고위공무원단	1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8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9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64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201
방호주사	1
운전주사	1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10
운전주사보	8
위생주사보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13
방호서기	1
운전서기	5
조리서기	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2

방호서기보	6
운전서기보	17
위생서기보	10
조리서기보	8
통신운영주사	28
열관리운영주사	2
사무운영주사	4
통신운영주사보	9
사무운영주사보	1
통신운영서기	2
전기운영서기	2
사무운영서기	2
열관리운영서기보	3
사무운영서기보	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단서 관련)

총계	865
일반직 계	865
고위공무원단	1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8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9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70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98
방호주사	1
운전주사	1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12
운전주사보	8
위생주사보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10
방호서기	1
운전서기	5
조리서기	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0

방호서기보	3
운전서기보	17
위생서기보	10
조리서기보	8
통신운영주사	28
열관리운영주사	2
사무운영주사	4
통신운영주사보	9
사무운영주사보	1
통신운영서기	2
전기운영서기	2
사무운영서기	2
열관리운영서기보	3
사무운영서기보	7